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368

발의연월일 : 2026. 11. 2.

발 의 자 : 조승환・곽규택・윤용근
이소희・김상훈・배준영
김은혜・김승수・김미애
김태호・박대출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당국이 중심이 되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규제를 수행하고, 민사 및 형사 규제가 이를 보완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형벌 및 벌금 등 형사적 규제가 제도적으로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 매우 과도한 편으로 이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해외입법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많은 형벌조항을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심지어 경쟁법 즉 공정거래법에 형벌규정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 34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살펴보면,

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 16개국은 경쟁법상 형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영국・캐나다・호주 등 10개국은 담합행위에 한해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일본・프랑스 등 8개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일부에 대해 형벌 규정이 추가로 있음.

물론 그동안에도 담합행위와 같은 위법성 및 경쟁제한성과 해악이 큰 행위를 제외하고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을 축소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며, 게다가 우리나라는 형벌 외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한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음. 또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제재(과징금)와 형벌을 병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둘 중 하나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법 제40조제1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법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형벌을 유지하는 한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제1항제1호・제10호 및 제125조제4호).

주요내용

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 삭제

안 제124조제1항제1호 삭제.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 삭제

안 제125조제4호 삭제 및 제124조제1항제10호 개정.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25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벌칙) ① ---------- ---------- ---------- ----------.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삭 제>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0.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5조(벌칙)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